

이 텍스트는 순전히 문서화 도구로 의도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합 기관은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서문을 포함한 관련 행위의 정통 버전은 공식 문서에 게시된 것입니다.

유럽 연합 저널이며 EUR-Lex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공식 텍스트는 링크를 통해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B**

규정을 시행하는 위원회(EU) 2021/1165

2021년 7월 15일

유기농 생산에 사용할 특정 제품 및 물질 승인 및 확립

(EEA와 관련된 텍스트)

(OJ L 253, 16.7.2021, p. 13)

다음에 의해 수정됨:

			공식 저널	
		No	페이지	날짜
► <u>M1</u>	2023년 1월 17일의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3/121	L 16	24	2023년 1월 18일
► <u>M2</u>	2023년 10월 25일의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3/2229	L 2229	1	2023년 10월 26일
► <u>M3</u>	2025년 05월 23일의 위원회 시행규정(EU) 2025/973	L 973	1	26.5.2025
► <u>M4</u>	2025년 12월 11일의 위원회 시행규정 (EU) 2025/2501	L 2501	1	12.12.2025



규정을 시행하는 위원회(EU) 2021/1165

2021년 7월 15일

유기농에서 특정 제품 및 물질 사용 허가

생산 및 목록 작성

(EEA와 관련된 텍스트)

제1조

식물 보호 제품의 활성 물질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1)항 (a)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록에 명시된 대로 유기 생산에 사용되는 식물 보호 제품에는 이 규정의 부록 I에 나열된 활성 물질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식물 보호 제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a)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107/2009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¹⁾;
- (b) 회원국이 부여한 해당 제품의 허가에 명시된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됩니다.
- (c) 위원회 시행 규정(EU) 제540/2011호 부록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됩니다.²⁾.

제2조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영양소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1)항 (b)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부록 II에 나열된 제품 및 물질만이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식물 영양, 깔짚 개량 및 풍부화 또는 조류 재배 또는 양식 동물의 사육 환경을 위한 영양소로서 유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2003/2003을 포함한 관련 연합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³⁾,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관련 적용 규정(EU) 2019/1009 조항⁴⁾, 유럽연합 규정(EC) 1069/2009

(1) 식물 보호 제품의 시장 출시에 관한 2009년 10월 2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107/2009(OJ L 309, 24.11.2009, p. 1).

(2) 승인된 활성 물질 목록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107/2009를 이행하는 2011년 5월 25일자 위원회 이행 규정(EU) 540/2011(OJ L 153, 11.6.2011, p. 1).

(3) 비료에 관한 2003년 10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2003/2003(OJ L 304, 21.11.2003, p. 1).

(4) 2019년 6월 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1009는 EU 비료 제품의 시장 출시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규정(EC) 1069/2009 및 (EC)를 개정합니다.

1107/2009호 및 규정 (EC) 2003/2003호 폐지(OJ L 170 25.6.2019, p. 1).

▼B

국회와 의회⁽⁵⁾ 및 위원회 규정(EU) 142/2011⁽⁶⁾ 및 해당되는 경우, 연합법에 따른 국가 규정에 따라.

제3조

**식물, 조류, 동물 또는 효모 유래의 비유기 사료 또는
미생물 또는 미네랄 유래의 사료 원료**

규정 (EU) 2018/848 제24조(1)항 (c)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부록 III의 A부에 나열된 제품 및 물질만이 식물, 조류, 동물 또는 효모 유래의 비유기 사료 원료 또는 미생물 또는 미네랄 유래의 사료 원료로서 유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이 특히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제767/2009호를 포함한 연합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⁷⁾ 및 해당되는 경우, 연합법에 따른 국가 규정에 따라.

제4조

사료첨가제 및 가공보조제

규정 (EU) 2018/848 제24조(1)항 (d)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부록 III의 B부에 나열된 제품 및 물질만이 동물 영양에 사용되는 사료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로서 유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이 특히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제1831/2003호를 포함한 연합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⁸⁾ 및 해당되는 경우, 연합법에 따른 국가 규정에 따라.

(5) 2009년 10월 2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069/2009는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동물 부산물 및 파생 제품에 관한 건강 규칙을 정하고 규정(EC) 1774/2002를 폐지합니다(OJ L 300, 14.11.2009, p. 1).

(6) 2011년 2월 25일자 위원회 규정 (EU) 142/2011은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동물 부산물 및 파생 제품에 관한 건강 규칙을 정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국경에서 수의학적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 샘플 및 품목에 관한 이사회 지침 97/78/EC를 이행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069/2009를 시행합니다(OJ L 54, 26.2.2011, p. 1).

(7)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767/2009, 사료의 시장 출시 및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831/2003을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79/373/EEC, 위원회 지침 80/511/EEC, 이사회 지침 82/471/EEC, 83/228/EEC, 93/74/EEC, 93/113/EC 및 96/25/EC와 위원회 결정 2004/217/EC를 폐지함(OJ L 229, 1.9.2009, p. 1).

(8) 동물 영양제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관한 2003년 9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831/2003(OJ L 268, 2003년 10월 18일, 29쪽).

▼B

제5조

세척 및 소독용 제품

1.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1)항 (e)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부록 IV의 A부에 나열된 제품만이 동물 생산에 사용되는 연못, 케이지, 탱크, 경주로, 건물 또는 설비의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유럽 연합법, 특히 규정 (EC) 648/2004 및 규정 (EU) 528/2012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유럽 연합법에 근거한 국가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2.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1)항 (f)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부록 IV의 B부에 나열된 제품만이 농업 농장의 보관을 포함하여 식물 생산에 사용되는 건물 및 설비의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유럽 연합법, 특히 규정 (EC) 648/2004 및 규정 (EU) 528/2012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유럽 연합법에 근거한 국가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3.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1)항 (g)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부록 IV의 C부에 나열된 제품만이 가공 및 보관 시설에서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유럽 연합법, 특히 규정 (EC) 648/2004 및 규정 (EU) 528/2012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유럽 연합법에 근거한 국가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4. 이 규정의 부록 IV의 A, B 또는 C 부분에 포함되기 전에,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1)항 (e), (f) 및 (g)에 언급된 세척 및 소독용 제품은 규정 (EU) 2018/848의 적용일 이전에 규정 (EC) 834/2007 또는 국가법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경우 해당 제품이 특히 규정 (EC) 648/2004 및 규정 (EU) 528/2012와 같은 연합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연합법에 근거한 국가 조항에 따라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규정 (EU) 2018/848 제24조(2)항 (a)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부록 V의 A부에 나열된 제품 및 물질만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식품 효소와 가공 유기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가공 보조제가 포함됩니다. 다만, 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B

특히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333/2008을 포함한 연합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⁹⁾ 및 해당되는 경우, 연합법에 따른 국가 규정에 따라.

제7조

**생산에 사용되는 비유기농 농업재료
가공된 유기농 식품**

규정 (EU) 2018/848 제24조(2)항 (b)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 부록 V의 B부에 나열된 비유기 농업 성분만이 가공 유기 식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은 관련 유럽 연합법 조항에 따라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유럽 연합법에 근거한 국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EU 규정 2018/848 부속서 II 제4부 제2절에 규정된 가공 식품의 유기 생산에 대한 자세한 요건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단은 EU 규정 2018/848 부속서 II 제4부 제2.2.2항에 언급된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또는 제품 및 물질로 사용되는 비유기 농업 성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효모 및 효모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보조제

규정 (EU) 2018/848 제24조(2)항 (c)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 부록 V의 C부에 나열된 제품 및 물질만이 식품 및 사료용 효모 및 효모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과 물질은 관련 유럽 연합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유럽 연합법에 근거한 국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와인의 유기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 및 물질

규정(EU) 2018/848 부록 II 제6부 2.2항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 부록 V 제D부에 나열된 제품 및 물질만이 규정(EU) 제1308/2013 부록 VII 제2부에 언급된 유기 포도 제품의 생산 및 보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⁹⁾ 식품 첨가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333/2008(2008년 12월 16일) (OJ L 354, 31.12.2008, p. 16).

▼B

특히 EU 규정(EU) 1308/2013 및 위원회 위임 규정(EU) 2019/934에 명시된 한도 및 조건 내에서 관련 연합법 조항을 준수합니다.¹⁰⁾ 및 해당되는 경우, 연합법에 따른 국가 규정에 따라.

제10조

제품 사용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

제3국의 특정 지역에 있는 물질

1. 규정(EU) 2018/848의 제46조(1)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해당 규정의 제45조(2)에 명시된 특정 조건으로 인해 제품 또는 물질이 연합 외부의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설명하고, 그러한 특정 허가의 이유를 제시하고, 이 규정에 따라 허가된 제품 및 물질이 해당 지역의 특정 조건으로 인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서류가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합 및 회원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을 회원국에 전달하고 그러한 요청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분석한다.

1. 위원회는 서류에 언급된 특정 조건에 비추어 제품 또는 물질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 그러한 특정 승인은 해당 지역에서 정당화됩니다.

(b) 서류에 기술된 제품 또는 물질은 규정(EU) 2018/848 제2장에 규정된 원칙, 제24조(3)항에 명시된 기준 및 제24조(5)항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합니다.

(c) 제품 또는 물질의 사용은 특히 식물 보호 제품에 포함된 활성 물질의 경우 유럽 연합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제396/2005호¹¹⁾.

승인된 제품 또는 물질은 이 규정의 부록 VI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¹⁰⁾ 2019년 3월 12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1308/2013을 보완하는 위원회 위임 규정(EU) 2019/934는 알코올 도수를 높일 수 있는 포도 재배 지역, 포도 제품 생산 및 보존에 적용되는 허가된 와인 양조 관행 및 제한 사항, 부산물의 최소 알코올 함량 및 폐기, OIV 파일의 공개(OJ L 149, 7.6.2019, p. 1)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¹¹⁾ 2005년 2월 23일 식물 및 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살충제 최대 잔류 수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396/2005 및 이사회 지침 91/414/EEC 개정(OJ L 70, 16.3.2005, p. 1).

▼B

4. 규정 (EU) 2018/848의 제45조(2)항에 언급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요소가 없고 규정 (EU) 2018/848의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회원국 또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3항에 언급된 위원회의 결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지 않는 한, 허가는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M3

제10a조

1. 회원국이 규정(EU) 2018/848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 조건으로 인해, 연합 최외곽 지역에서 특정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관련 제품 또는 물질을 설명하는 서류(dossier)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서류에는 규정(EU) 2018/848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 조건으로 인한 해당 특정 승인의 사유와,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제품 및 물질이 해당 최외곽 지역의 특정 조건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은 이 서류가 연합 및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을 회원국에 전달하고 그러한 요청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분석한다.

(a) 해당 특정 승인이 문제의 최외곽 지역에서 정당화되는 경우,

(b) 서류에 설명된 제품 또는 물질이 규정(EU) 2018/848 제 II 장에 규정된 원칙,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기준,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c)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사용이 연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특히, 식물 보호 제품에 포함된 유효 성분대 대해서는 규정(EC) No 396/2005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승인된 제품 또는 물질은 본 규정의 부속서 VI에 포함되는 것이다.

4. 규정(EU) 2018/848 제45조 제2항에 언급된 2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규정(EU) 2018/848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어떠한 회원국,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구도 위원회의 제3항 관련 결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승인은 자동으로 추가 2년 동안 갱신되는 것이다.

▼B

제11조

폐지

규정 (EC) 889/2008은 폐지됩니다.

▼M4

그러나 부록 VII 및 IX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제12조

과도기 조항

1. 본 규정 제5조 제4항의 목적상, Regulation (EC) No 889/2008의 부속서 VII에 나열된 세척 및 소독용 제품은, 본 규정의 부속서 IV 제D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 생산에 사용되는 연못, 케이지, 수조, 수로, 건물 또는 설비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해 ►**M4** 2027년 12월 31일 ◀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2)항 (b)의 목적을 위해 규정 (EC) 제 889/2008의 부록 IX에 나열된 비유기농 농업 성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공 유기농 식품 생산에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기농 농업 성분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가공 유기농 식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해당 날짜 이후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3. 2022년 1월 1일 이전에 (EC) 제889/2008호 규정 제68조에 따라 발급된 서류 증거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지만 2022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발효 및 적용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유럽 연합 공식 저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4** 제5조(1), (2) 및 (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2 제7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B 본 규정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부록 I

제24조(1)항(a)에 언급된 유기 생산에 사용이 승인된 식물 보호 제품에 포함된 활성 물질

규정 (EU) 2018/848

이 부록에 나열된 활성 물질은 이 부록에 명시된 대로 유기 생산에 사용되는 식물 보호 제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식물 보호 제품은 규정(EC) No 1107/2009에 따라 허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물 보호 제품은 시행 규정(EU) No 540/2011 부록에 명시된 조건과 해당 제품이 사용되는 회원국에서 부여한 허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유기 생산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다 제한적인 조건은 아래 각 표의 마지막 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EU) 2018/848의 제9조(3)항에 따라 식물 보호 제품의 구성 요소인 안전제, 상승제 및 공동 제형제와 식물 보호 제품과 혼합되는 보조제는 규정(EC) 1107/2009에 따라 허가된 경우 유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록의 물질은 규정(EU) 2018/848의 제3조(24)항에 정의된 해충 방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EU) 2018/848 부속서 II의 제1부 1.10.2항에 따라, 이러한 물질은 특히 유익한 곤충, 진드기 및 선충류와 같은 생물학적 방제제를 사용하여 해당 제1부 1.10.1항에 규정된 조치로 식물을 해충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제1143/2014호의 조항을 준수합니다.1).

이 부록의 목적을 위해 활성 물질은 다음 하위 범주로 구분됩니다.

1. 기본 물질

식물 또는 동물 기원의 기초 물질 및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78/2002 제2조에 정의된 식품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 물질(EU 규정(EU) 제540/2011 시행 규정 부록 C에 나열된 물질)2)는 유기 생산에서 식물 보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물질은 아래 표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검토 보고서에 설정된 용도,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3) 그리고 아래 표의 마지막 열에 있는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합니다.

이행 규정(EU) 제540/2011호 부록 C에 나열된 기타 기본 물질은 아래 표에 나열된 경우에만 유기 생산에서 식물 보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물질은 관련 검토 보고서에 명시된 용도,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3) 아래 표의 오른쪽 열에 있는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세요.

염기성 물질은 제초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침입 외래종의 도입 및 확산 방지 및 관리에 관한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제1143/2014호(OJ L 317, 4.11.2014, p. 35).

(2) 2002년 1월 28일 식품법의 일반 원칙 및 요건을 정하고, 유럽 식품 안전 기관을 설립하며,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78/2002(OJ L 31, 1.2.2002, p. 1).

(3) 살충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active-substances/?event=search.as>

▼B

숫자와 의 일부 부록(1)	CAS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C		말풀 아르벤스엘.*	

▼M2

2C	70694-72-3	키토산 염산염(2)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제1380/2013호 제2조에 정의된 <i>Aspergillus</i> 또는 유기 양식업 또는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얻은 것)
----	------------	------------	--

▼B

3C	57-50-1	자당*	
4C	1305-62-0	수산화칼슘	
5C	90132-02-8	식초*	
6C	8002-43-5	레시틴*	
7C	-	살릭스spp. 피질*	
8C	57-48-7	과당*	
9C	144-55-8	탄산수소나트륨	
10C	92129-90-3	유장*	
11C	7783-28-0	인산이암모늄	오직 함정에만
12C	8001-21-6	해바라기 기름*	
14C	84012-40-8 90131-83-2	두드러기종 (<i>Urtica dioica</i> 발채) (<i>Urtica urens</i> 발채)*	
15C	7722-84-1	과산화수소	
16C	7647-14-5	염화나트륨	
17C	8029-31-0	맥주*	
18C	-	겨자씨 가루*	

▼M3

19C	14807-96-6	마그네슘 수소 메타규산염 규산염 광물 (활석 E553b)	위원회 규정(EU) 231/2012에 따른 식품 등급(3)
-----	------------	---------------------------------	----------------------------------

▼B

20C	8002-72-0	양파 기름*	
21C	52-89-1	L-시스테인(E920)	
22C	8049-98-7	소의 우유*	
23C	-	알리움 세파* L. 전구 추출물	

▼B

숫자와 의 일부 부록 (1)	CAS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식물 또는 동물성 원료로 식품을 기반으로 한 기타 기본 물질*	
24C	9012-76-4	키토산*	Aspergillus 또는 유기 양식업 또는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얻 은 것(EU 규정 제1380/2013호 제2조에 정의됨)

▼B

(1) 시행 규정 (EU) 540/2011에 따른 목록, 숫자 및 범주: A 부분: 규정 (EC) 1107/2009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활성 물질, B 부분: 규정 (EC) 1107/2009에 따라 승인된 활성 물질, C 부분: 기본 물질, D 부분: 저위험 활성 물질, E 부분: 대체 후보 물질.

(2) 2013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380/2013, 이사회 규정 (EC) 1954/2003 및 (EC) 1224/2009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 (EC) 2371/2002 및 (EC) 639/2004와 이사회 결정 2004/585/EC를 폐지함(OJ L 354, 28.12.2013, p. 22).

► **M1**(3) 2012년 3월 9일 식품에 대한 사양을 정하는 EU 위원회 규정 231/2012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 (EC) 1333/2008 부록 II 및 III에 나열된 첨가물(OJ L 83, 22.3.2012, p. 1). ◄

2.저위험 활성 물질

미생물을 제외한 저위험 활성 물질은 이행 규정(EU) 제540/2011호 부록 D에 나열되어 있으며, 아래 표 또는 이 부록의 다른 곳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유기 생산에서 식물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위험 활성 물질은 규정(EC) 제1107/2009호에 따른 용도,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아래 표의 마지막 열에 있는 추가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숫자와 의 일부 부록 (1)	CAS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2D		코스-오가	
3D		세레비산 및 미생물 세포 조각을 기반으로 한 기타 제품	GMO원산지가 아님
5D	10045-86-6	인산제1철(인산철(III))	
12D	9008-22-4	라미나린	다시마는 유기 양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2.4항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집됨
16D	CAS 할당되지 않음	ABE-IT 56(용해물의 성분) <i>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리아</i> 균주 DDSF623)	GMO 원산지가 아니다 GMO 원산지의 재배매체를 사용하여 생산되지 않음
19D	23960-07-8	라반톨릴 세네시오에이트	

▼M1

▼M3

▼B

숫자와 의 일부 부록 (1)	CAS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M1 20D	10058-44-3	피로인산철	
▼M2 24D	144-55-8	탄산수소나트륨	
▼M1 28D		백색 루피너스(Lupinus albus) 발아 종자로부터 얻은 수성 추출물	
▼M2		식물 또는 동물 유래의 기타 저위험 물질*	제조용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M3 32D	298-14-6	탄산수소칼륨	
38D		직쇄형 나비목 곤충 페로몬(아세테이트류)	
39D	98999-15-6	양 지방	냄새를 이용한 기피제로 사용
44D	14808-60-7 및 7631-86-9	석영모래 이산화규소	

(1) 시행 규정 (EU) 540/2011에 따른 목록, 숫자 및 범주: A 부분: 규정 (EC) 1107/2009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활성 물질, B 부분: 규정 (EC) 1107/2009에 따라 승인된 활성 물질, C 부분: 기본 물질, D 부분: 저위험 활성 물질, E 부분: 대체 후보 물질.

3. 미생물

시행 규정 (EU) 제540/2011호 부록 A, B 및 D부에 나열된 모든 미생물은 GMO 기원이 아니며 관련 검토 보고서에 명시된 용도,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만 유기농 생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은 EC 규정 1107/2009에 따라 활성 물질로 간주되는 생물학적 방제제입니다.

4. 위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활성 물질

(EC) 규정 1107/2009에 따라 승인되고 아래 표에 나열된 활성 물질은 (EC) 규정 1107/2009에 따른 용도,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사용하고 아래 표의 오른쪽 열에 있는 추가 제한 사항(있는 경우)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유기 생산에서 식물 보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의 일부 부록 (1)	CAS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39A	131929-60-7 131929-63-0	스피노사드	
225A	124-38-9	이산화탄소	

▼B

숫자와 의 일부 부록 (1)	CAS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227A	74-85-1	에틸렌	바나나와 감자에만 사용 가능하나, 과실파리 피해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감귤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0A	i.a. 67701-09-1	지방산	제초제를 제외한 모든 용도 허가
231A	8008-99-9	마늘 추출물 (<i>알리움 사티븀</i>)	
234A	CAS 번호: 미알당 CIPAC 번호: 901	젤라틴을 제외한 가수분해 단백질	

▼M3

▼B

220A	1332-58-7	알루미늄 규산염(카올린)	
236A	61790-53-2	규조토	

▼M3

▼B

343A	11141-17-6 84696-25-3	넝나무 (<i>Azadirachta indica</i>)	종자에서 추출한 아자디락틴 (마르고사 추출물)
240A	8000-29-1	시트로넬라 오일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허용
241A	84961-50-2	정향유(클로브 오일)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허용
242A	8002-13-9	유채유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허용
243A	8008-79-5	스피어민트 오일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허용
56A	8028-48-6 5989-27-5	오렌지 오일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허용
228A	68647-73-4	티트리 오일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허용
246A	8003-34-7	티트리 오일	제초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 허용
228A	68647-73-4	식물에서 추출한 피레트린	
294A 295A	64742-46-7 72623-86-0 97862-82-3 8042-47-5	파라핀 오일	

▼B

숫자와 의 일부 부록 (1)	CAS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345A	1344-81-6	석회유황(칼슘폴리설파이드)	
44B	9050-36-6	말토덱스트린	
45B	97-53-0	유제놀	
46B	106-24-1	제라니올	
47B	89-83-8	티몰	

▼M3

153B 그 외		페로몬 및 기타 반화학물질	
-------------	--	----------------	--

▼B

10E	20427-59-2	수산화구리	시행 규정(EU) 540/2011에 따 라 7년 동안 헥타르당 최대 28kg의 구리를 사용하는 용도 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10E	1332-65-6 1332-40-7	옥시염화구리	
10E	1317-39-1	산화구리	
10E	8011-63-0	보르도 혼합물	
10E	12527-76-3	삼염기성 황산구리	

▼M1

40A	52918-63-5	델타메트린	Bactrocera oleae, Ceratitis capitata 및 Rhagoletis completa에 대한 특정 유인제가 포함된 트랩에서만 사용 가능합 니다.
-----	------------	-------	---

▼B

5E	91465-08-6	람다-시할로트린	Bactrocera oleae 및 Ceratitis capitata에 대한 특정 유인제가 포함된 트랩에서만 사용 가능합 니다.
----	------------	----------	---

(1) 시행 규정 (EU) 540/2011에 따른 목록, 숫자 및 범주: A 부분: 규정 (EC) 1107/2009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활성 물질, B 부분: 규정 (EC) 1107/2009에 따라 승인된 활성 물질, C 부분: 기본 물질, D 부분: 저위험 활성 물질, E 부분: 대체 후보 물질.

▼B

부록 II

(b) 항목에 언급된 허가된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영양소 규정(EU) 2018/848 제24조(1)항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영양소⁽¹⁾ 이 부록에 나열된 물질은 다음을 준수하는 경우 유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비료 제품에 관한 관련 연합 및 국가 법률, 특히 해당되는 경우 규정(EC) 2003/2003 및 규정(EU) 2019/1009;

— 동물 부산물에 관한 연합 법률, 특히 규정 (EC) 1069/2009 및 규정 (EU) 142/2011, 특히 부록 V 및 XI.

(EU) 2018/848 규정 부속서 II 제1부 1.9.6항에 따라 미생물 제제는 토양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거나 토양 또는 작물의 영양소 가용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합 및 국가 법률의 사용 사양 및 제한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생산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다 제한적인 조건은 표의 오른쪽 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 복합제품 또는 복합제품만을 포함하는 제품 여기에 나열된 자료	설명,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농장 비료	동물 배설물과 식물성 물질(동물 깔짚 및 사료 재료)을 혼합한 제품 공장식 농업 원산지 금지
건조된 농장 분뇨 및 탈수된 가금류 공장식 농장 원산지 금지 분뇨	
퇴비화 동물 배설물, 포함 가금류 분뇨 및 퇴비화된 농장 분뇨 포함	공장식 농업 원산지 금지
액체 동물 배설물	조절된 발효 및/또는 적절한 희석 후 사용 공장식 농업 원산지 금지
▼M2 퇴비화 또는 발효된 생물성 폐기물(유럽 의회 및 2008/98/EC의 별도 생물성 폐기물에서 얻은 제품 지침) 협의회 ⁽²⁾)	출처에서 수집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퇴비화 또는 혐기성 발효에 제출 식물성 및 동물성 생물성 폐기물만 폐쇄 및 모니터링 수집 시스템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회원국에서 허용하는 건조 물질 기준 최대 농도(mg/kg) : 카드뮴: 0.7; 구리: 70; 니켈: 25; 납: 45; 아연: 200; 수은: 0.4; 크롬(총): 70; 크롬(VI): 검출 불가
▼B 이탄	원예(시장원예, 화훼재배, 수목재배, 종묘)에 한하여 사용 가능
버섯 재배 폐기물	기질의 초기 구성은 이 부속서의 제품으로 제한됩니다.

(1) 특히 규정 (EU) 2019/1009 부록 1 제1부에 나열된 모든 제품 가능 범주를 포함합니다.

▼B

이름 복합제품 또는 복합제품만을 포함하는 제품 여기에 나열된 자료	설명,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지렁이 배설물(지렁이퇴비) 및 곤충 배설물-기질 혼합물	관련되는 경우 규정(EC) 1069/2009에 따라
구아노	
식물성 물질의 퇴비화 또는 발효 혼합물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퇴비화 또는 혐기성 발효를 거친 식물성 물질의 혼합물에서 얻은 제품
이 부록에 나열된 식물 또는 동물성 원료와 공동 소화된 동물성 부산물을 포함하는 바이오가스 소화물	3등급의 동물 부산물(야생 동물의 부산물 포함) 및 2등급의 소화관 내용물(EC 규정 1069/2009에 정의된 등급) 공장식 농업 원산지 금지 프로세스는 규정(EU) 142/2011에 따라야 합니다. 작물의 식용 부분에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아래와 같은 동물성 제품 또는 부산물: 혈액 식사 발굽 식사 뿔가루 뼈가루 또는 탈젤라틴 뼈가루 생선가루 고기 식사 깃털, 털 및 가죽 가루('치캣') 양모 모피(1) 머리카락 유제품 가수분해 단백질(2)	(1) 건물 중량의 크롬(VI)의 최대 농도(mg/kg): 검출 불가 (2) 작물의 식용 부분에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M3

예를 들어 식물성 원료의 제품 및 부산물: 유지종자 케이크 가루, 코코아 껍질, 맥아 줄기 비료

▼B

식물성 가수분해 단백질	
조류 및 조류 제품	직접적으로 얻은 경우: (i) 탈수, 동결 및 분쇄를 포함한 물리적 과정 (ii) 물 또는 수용액 산 및/또는 알칼리성 용액으로 추출 (iii) 발효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2.4항에 따라 유기농 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집된 것만 가능
툽밥과 나무 조각	벌채 후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
퇴비화된 나무껍질	벌채 후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
나무재	벌채 후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



이름 복합제품 또는 복합제품만을 포함하는 제품 여기에 나열된 자료	설명,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연약한 땅속의 인산암석	연성광물인산염을 분쇄하여 얻은 제품으로 인산삼칼슘과 탄산칼슘을 필수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음 영양소의 최소 함량(중량 백분율): 25% P_2O_5형⁵ 인은 무기산에 용해되는 P_2O_5로 표현되며, P_2O_5의 표시된 함량의 최소 55%는 2% 포름산에 용해됩니다. 입자 크기: — 무게 기준 90% 이상이 0.063mm의 메시를 가진 체를 통과할 수 있음 — 최소 99%의 중량이 0.125mm 메시의 체를 통과할 수 있음 2022년 7월 15일까지 P의 카드뮴 함량이 90mg/kg 이하²형⁵;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알루미늄-인산칼슘	열처리 및 분쇄를 통해 비정질 형태로 얻은 제품으로 알루미늄 및 인산칼슘을 필수 성분으로 함유함 영양소의 최소 함량(중량 백분율): 30% P_2O_5형⁵ 인은 P로 표현됨²형⁵무기산에 용해 가능, P의 표시된 함량의 최소 75%²형⁵알칼리성 암모늄 시트르산(Joulie)에 용해됨 입자 크기: — 무게 기준 90% 이상이 0.160mm 메시의 체를 통과할 수 있음 — 최소 98%의 중량이 0.630mm의 메시를 가진 체를 통과할 수 있음 2022년 7월 15일까지 P의 카드뮴 함량이 90mg/kg 이하²형⁵;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염기성 토양에만 사용 가능($\text{pH} > 7.5$)
염기성 슬래그(토마스 인산염 또는 토마스 슬래그)	인산용융물을 처리하여 철재련에서 얻은 제품으로 필수성분으로 규산칼슘인산염을 함유함 영양소의 최소 함량(중량 백분율): 12% P_2O_5형⁵ 인은 무기산에 용해되는 오산화인으로 표현되며, 오산화인의 표시 함량의 최소 75%는 2% 구연산에 용해됩니다.



이름 복합제품 또는 복합제품만을 포함하는 제품 여기에 나열된 자료	설명,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또는 10% P_2O_5형⁵ 인은 2% 구연산에 용해되는 5산화인으로 표현됨 입자 크기: — 최소 75%가 0.160mm 메시의 체를 통과할 수 있음 — 최소 96%가 0.630mm의 메시를 가진 체를 통과할 수 있음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조칼륨염	조칼륨염으로부터 얻은 제품 영양소의 최소 함량(중량 백분율): 9% K_2O형 수용성 K로 표현되는 칼륨:오2% 마그네슘옥사이드 수용성 염 형태의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으로 표현됨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칼륨 황산염, 흑시 포함하는 마그네슘 소금	물리적 추출 공정을 통해 조칼륨염에서 얻은 제품, 아마도 마그네슘염도 포함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	암모늄 증류물 제외
예를 들어 탄산 칼슘: 분필, 석회암, 분쇄 석회암, 브르타뉴 개량제(말), 인산 분필	오직 자연에서 유래된 것
연체동물의 폐기물	(EU) 제1380/2013호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기 양식업 또는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만 사용 가능
달걀 껍질	공장식 농업 원산지 금지
마그네슘과 탄산칼슘	오직 자연에서 유래된 것 예: 마그네슘 분필, 분쇄 마그네슘, 석회석
황산마그네슘(키세라이트)	오직 자연에서 유래된 것
염화칼슘 용액	사과나무 잎 처리에만 사용, 칼슘 결핍 방지

▼B

이름 복합제품 또는 복합제품만을 포함하는 제품 여기에 나열된 자료	설명,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황산칼슘(석고)	다양한 수화도의 황산칼슘을 함유한 천연원료 제품 영양소의 최소 함량(무게당 백분율): 25% 칼슘 35 % 그래스 ₃ 총 CaO + SO로 표현된 칼슘 및 황 ₃ 분쇄의 고운 정도: — 최소 80%가 2mm 메시 폭의 체를 통과해야 함 — 최소 99%가 10mm 메시 폭의 체를 통과합니다.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설탕 생산에서 나오는 산업용 석회	사탕무와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부산물
진공소금 생산으로 얻은 산업용 석회	산에서 발견되는 소금물을 이용한 진공소금 생산의 부산물
원소 황	2022년 7월 15일까지: 규정(EC) 제2003/2003호 부록 I D부에 따라 나열된 대로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기 미량 영양소 비료	2022년 7월 15일까지: 규정 (EC) 2003/2003 부록 I의 E 부분에 따라 나열된 대로;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염화나트륨	
석분, 점토 및 점토 광물	
레오나다이트(부식산이 풍부한 원시 유기 퇴적물)	광산 활동의 부산물로 얻은 경우에만 해당
부식산과 폴빅산	암모늄염을 제외한 무기염/용액에서 얻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음용수 정화에서 얻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일라이트	채굴 활동의 부산물로 얻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예: 갈탄 채굴의 부산물)
키틴(갑각류 껍질에서 얻은 다당류)	(EU) 제1380/2013호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기 양식업 또는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얻은 것

▼M3

▼B

▼B

이름 복합제품 또는 복합제품만을 포함하는 제품 여기에 나열된 자료	설명,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유기농 ⁽¹⁾ 산소가 배제된 담수역에서 형성된 풍부한 퇴적물 (예: 사프로펠)	담수체 관리의 부산물이거나 이전 담수 지역에서 추출된 유기 퇴적물만 해당되는 경우, 추출은 수생 생태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살충제, 지속성 유기 오염 물질 및 석유와 같은 물질의 오염이 없는 출처에서 유래된 침전물만 2022년 7월 15일까지: 건조 물질 1kg당 mg 단위의 최대 농도: 카드뮴: 0.7; 구리: 70; 니켈: 25; 납: 45; 아연: 200; 수은: 0.4; 크롬(총): 70; 크롬(VI): 검출 불가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바이오차 - 다양한 식물성 유기물질로 만든 열분해 제품으로 토양 개량제로 사용	부록 I에 포함된 제품으로만 수확 후 처리한 식물성 재료에서만 사용 가능 2022년 7월 15일까지: 건조 물질(DM) kg당 최대 4mg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한도가 적용됩니다.
▼M1	
회수된 스트루바이트와 침전된 인산염염	제품은 규정(EU) 2019/1009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 분뇨는 공장식 농장에서 유래될 수 없습니다.
질산나트륨	폐쇄된 시스템의 육지에서의 조류 생산에만 사용 가능
염화칼륨(염화칼륨)	오직 자연에서 유래된 것
▼M2	
셀레늄염	가축사육 및/또는 방목 또는 사료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양이 부족한 경우에만 해당

▼B

이름 복합제품 또는 복합제품만을 포함하는 제품 여기에 나열된 자료	설명,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M3 이산화탄소	폐쇄 시스템에서 육상 조류(algae) 생산을 위한 물의 농축(enrichment)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이산화탄소는 식품 등급이어야 함 가능한 경우, 이산화탄소는 다른 공정의 부산물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Directive (EU) 2018/2001)에 따라 확보된 공급원에서 얻어야 함 온실 생산에도 사용 가능
아세트산칼	온실 내 채소 및 사과나무의 칼슘 결핍 방지를 위한 엽면 살포(foliar application)에만 사용 가능 천연 유래 탄산칼슘으로부터 얻은 것
인산칼슘	하수 슬러지 재(sewage sludge ash)로부터 유래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규정 (EU) 2019/100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함
식물 섬유 매트	대마 섬유, 아마 섬유, 코코넛 섬유 등 식물성 섬유로 구성 비료, 토양개량제, 영양분, 첨가제 또는 결합제 없이 기계적으로만 제조된 것 규정 (EU) 2018/848 Annex II Part I 1.3(a)에 따른 발아 종자 생산용 불활성 배지로만 사용 가능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 원료를 사용해야 함
글루콘산칼슘 및 글루콘산마그네슘	미생물 발효로부터 유래된 것

▼B

- (1) 여기서 '유기농'은 유기화학의 의미로 사용되며 유기농업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2) 폐기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2008년 11월 19일 지침 2008/98/EC 및 특정 지침의 폐지(OJ L 312, 22.11.2008, p. 3).
- (3) Directive (EU) 2018/200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관련 지침)

▼B

부록 III

사료 또는 사료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승인된 제품 및 물질

A부

(c) 항목에 언급된 식물, 조류, 동물 또는 효모 유래의 승인된 비유기 사료 재료 또는 미생물 또는 미네랄 유래의 사료 재료
규정(EU) 2018/848의 제24조(1)항

(1) 광물성 원료의 공급

사료 목록 번호 (1)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1.1.1	탄산칼슘	
11.1.2	석회질 해양 조개	
11.1.4	마를	
11.1.5	리토담	
11.1.6	염화칼슘	위원회 규정(EU) 2020/354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 ⁽²⁾ 특정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로 사용: 젖염병 및 임상 전 저칼슘혈증 위험 감소 젖소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선택적 적용(필요한 개별 동물에게만, 기간 한정)으로 사용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염수에서 정제된 염화칼슘(가능한 경우)
11.1.13	글루콘산칼슘	
11.2.1	산화마그네슘	
11.2.4	무수황산마그네슘	
11.2.6	염화마그네슘	
11.2.7	탄산마그네슘	
11.3.1	인산이칼슘	
11.3.2	인산일칼슘	
11.3.3	인산칼슘	
11.3.5	인산칼슘마그네슘	
11.3.8	인산마그네슘	
11.3.10	인산나트륨	
11.3.16	인산칼슘나트륨	

▼M3

▼B

▼M1

▼B

▼B

사료 목록 번호 (1)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1.3.17	모노암모늄 (수소암모늄 인산염) 인산염 오르토포스	수산양식에만 사용 가능
11.3.19	삼인산삼인산나트륨(STPP)	반려동물 사료에만 사용 가능
11.3.27	디소듐디하이드로겐디포스페이트 (SAPP)	반려동물 사료에만 사용 가능
11.4.1	염화나트륨	
11.4.2	중탄산나트륨	
11.4.4	탄산나트륨	
11.4.6	황산나트륨	
11.5.1	염화칼륨	

(1) 2013년 1월 16일자 사료 재료 카탈로그에 관한 위원회 규정(EU) 68/2013(OJ L 29, 30.1.2013, p. 1)에 따라.

(2) 특정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의 의도된 용도 목록을 확립하고 지침 2008/38/EC를 폐지하는 2020년 3월 4일의 위원회 규정(EU) 2020/354(OJ L 67, 5.3.2020, p. 1).

(2) 기타 사료원료

사료 목록 번호 (1)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예 7.1.4	조류 오일	발효 과정을 위한 발효 재배 매체를 통해 미 세조류에서 추출하여 얻은 오일은 GMO 기 원이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경우 유기 원료 에서 추출해야 합니다.
10	어류 또는 기타 수생동물의 분, 기름 및 기 타 사료 원료	해당 어업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증된 어 업에서 얻은 경우, 해당 어업은 규정(EU) 1380/2013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유능한 당국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것 으로 인증된 어업에서 얻은 경우입니다. 생산되거나 준비된 경우 없이 화학적으로 합성 용매 그 사용은 비초식성 가축에만 허가됩니다. 어류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사용은 어린 비 초식성 가축에만 허용됩니다.
10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 유래의 밀가 루, 기름 및 기타 사료 원료	규정(EU) 1380/2013에 명시된 원칙에 따 라 유능한 당국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증된 어업의 육식 양식 동 물의 경우,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3.1.3.1(c) 항목에 따라

▼M2

▼B

▼B

사료 목록 번호 (1)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U) 2018/848 규정 부속서 II 제3부 3.1.3.3(c)항에 따라 이미 인간 소비를 위해 잡은 생선,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다듬은 부분에서 파생되었거나 (EU) 2018/848 규정 부속서 II 제3부 3.1.3.3(d)항에 따라 인간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잡은 전체 생선,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에서 파생된 것
10	어분과 어유	양식 단계에서 내륙 수역의 어류, 보리새우, 민물 새우 및 열대 민물 어류는 규정(EU) 1380/2013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유능 당국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증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며,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3.1.3.1(c) 항에 의거함 연못과 호수에서 자연 사료가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리새우와 민물 새우의 사료 배합에 어분의 최대 25%와 어유의 최대 10%를 사용합니다. (대완골 spp.) 및 시암메기 사료에 최대 10%의 어분 또는 어유를 첨가합니다. 광가시우스 (EU) 2018/848 규정 부속서 II 제3부 3.1.3.4(c)(i) 및 (ii) 항목에 따라
12.1.5	효모	유기농 생산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
12.1.12	효모제품	유기농 생산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
12.1.9	유래 단세포 단백질	비유전자변형(non-GM) 균주에서만 유래해야 함 배양 배지는 합성 질소 공급원을 사용하지 않은 기질에서 유래해야 함 반추동물 및 기타 초식동물에 사용할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한 기질로부터 얻은 것 사용 시, 소포제(antifoaming agents)는 유기 생산에서 허용된 것만 사용해야 함
12.1.10	단백질이 풍부한 Bacillus subtilis 유래 제품	비유전자변형(non-GM) 균주에서만 유래해야 함 배양 배지는 합성 질소 공급원을 사용하지 않은 기질에서 유래해야 함 반추동물 및 기타 초식동물에 사용할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한 기질로부터 얻은 것 사용 시, 소포제(antifoaming agents)는 유기 생산에서 허용된 것만 사용해야 함

사료 목록 번호 (1)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M3 ex. 13.6.4	스테아린산칼슘	
13.11.1	프로필렌글리콜; [1,2-프로판디올]; [프로판-1,2-디올]	특정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로 위원회 규정 (EU) 2020/354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 케토시스 위험 감소 젖소, 암양 및 염소에 대한 사용은 선택적 용으로 제한됨(필요한 개별 동물에게만, 제한된 기간 동안)
▼B	콜레스테롤	양모기름(라놀린)에서 가수분해, 분리 및 결정화를 통해 얻은 제품, 조개류 또는 기타 출처에서 얻은 제품 새우 및 민물 새우의 양적 영양 요구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완굴유기 생산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육원 및 부화장에서 성장 단계 및 초기 생활 단계에서 spp.)
▼B	허브	특히 (EU) 2018/848 규정 제24조(3)항 (e) (iv)에 따라: — 유기적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생산/준비 없이 화학 용매 — 사료 배합량에 최대 1%
	당밀	특히 (EU) 2018/848 규정 제24조(3)항 (e) (iv)에 따라: — 유기적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생산/준비 없이 화학 용매 — 사료 배합량에 최대 1%
	식물플랑크톤과 동물플랑크톤	유기성 어린 개체의 유충 사육에서만
	특정 단백질 화합물	규정 (EU) 2018/848의 1.9.3.1(c) 및 1.9.4.2(c) 항목에 따라 특히: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유기적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생산/준비 없이 화학 용매, — 최대 35kg의 돼지 새끼 또는 어린 가금류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 12개월 기간당 농업용 사료 건조 중량의 최대 5%
	향료	특히 (EU) 2018/848 규정 제24조(3)항 (e) (iv)에 따라: — 유기적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생산/준비 없이 화학 용매 — 사료 배합량에 최대 1%

(1) 규정 (EU) 68/2013에 따라.

▼B

파트 B

**동물 영양에 사용되는 승인된 사료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
규정(EU) 2018/848 제24조(1)항(d)에 언급됨**

본 부분에 나열된 사료 첨가제는 규정 (EC) No 1831/2003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특정 조건은 (EC) 규정 1831/2003에 따른 허가 조건 외에도 적용됩니다.

(1) 기술적 첨가물

(A) 방부제

▼M3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a200	소르브산	
1k236	개미산	
1k 237i	포름산나트륨	
1a260	아세트산	
1a270 1a270i	유산	
1k280	프로피온산	
1a282	프로피온산칼슘	규정 (EC) No 767/2009 제3조 제2항 (o)에 정의된 “특정 영양 목적용 사료”로서만 사용 가능 규정 (EU) 2020/354 부속서 Part B 표 항목 ‘60’에 따라, 유열 및 아임상성 저칼슘혈증의 위험 감소 목적에 한함 (블러스 제형 포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젖소에만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 가능
1a 330	구연산	

▼B

(B) 항산화제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b306(i)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토코페롤	
1b306(ii)	토코페롤이 풍부한 식물성 오일(델타 풍부) ~에서 추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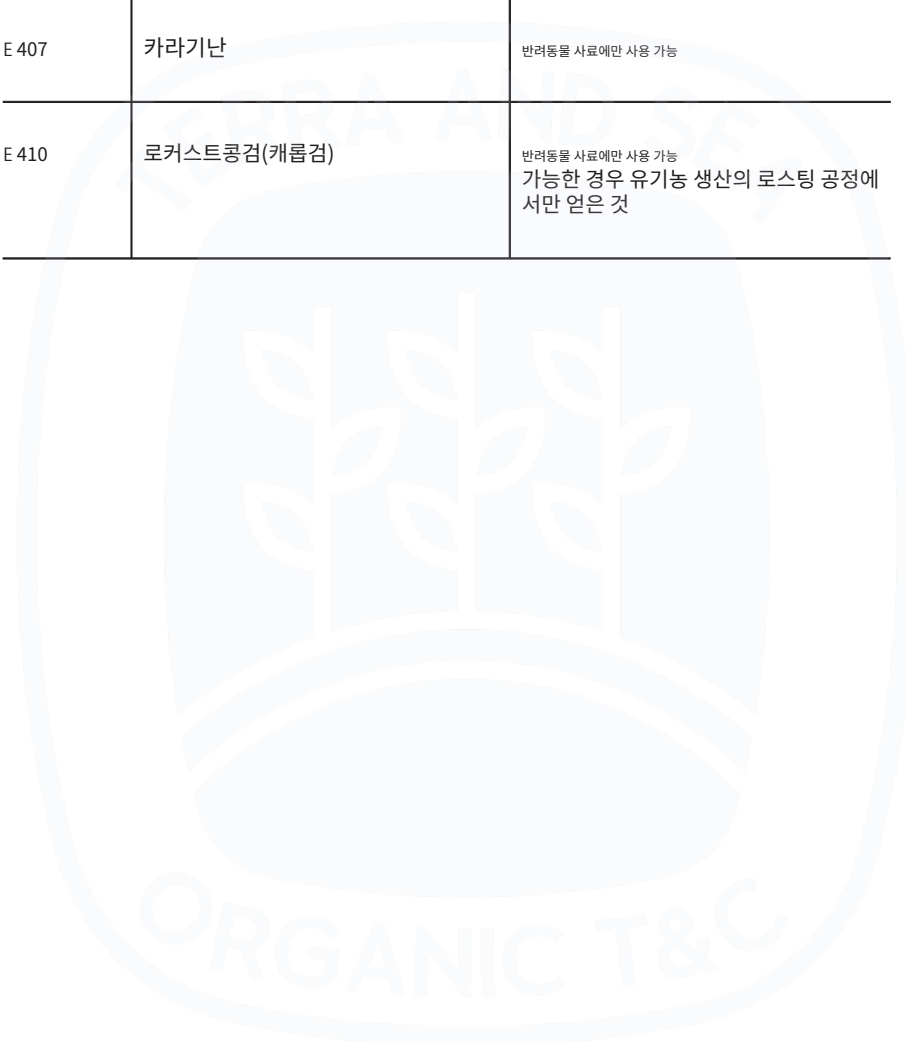
▼B

(C)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및 겔화제

▼M3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c322, 1c322i	레시틴	유기 원료에서 유래된 경우에만 수산양식용 동물사료로만 사용 가능
E 407	카라기난	반려동물 사료에만 사용 가능
E 410	로커스트콩검(캐롭검)	반려동물 사료에만 사용 가능 가능한 경우 유기농 생산의 로스팅 공정에 서만 얻은 것

▼M1



▼M1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 414	아카시아(아라비아검)	반려동물 사료에만 사용 가능 가능하다면 유기농 생산에서
E 415	잔탄검	
E 412	구아검	

▼B

(디) 결합제 및 응집 방지제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	----	---------------

▼M1

▼B

E 535	페로시안화나트륨	최대 함량: 20 mg/kg NaCl(페로시안화물 음이온으로 계산)
E 551b	콜로이드 실리카	
E 551c	키젤거(규조토, 정제)	
1m558i	벤토나이트	
E 559	석면이 없는 카올리나이트 점토	
E 560	녹니석과 녹니석의 천연 혼합물	
E 561	버미큘라이트	
E 562	세피올라이트	

▼M1

▼B

E 563	세피올라이트 점토	
E 566	나트롤라이트-포노라이트	
1g568	퇴적기원의 클리노프틸로라이트	
E 599	펄라이트	

▼M1

▼B

1g599	일라이트-몬모릴로나이트-카올리나이트	
-------	---------------------	--

(E) 사일리지 첨가제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K	효소, 미생물	적절한 발효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승인됨
1k236	개미산	
1k237	포름산나트륨	
1k280	프로피온산	
1k281	프로피온산나트륨	

▼M1

(F) 미코톡신에 의한 사료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질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1m558	벤토나이트	

▼B

(2) 감각첨가제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x2a	아스타잔틴	유기 감각류 껍질과 같은 유기 원료에서 유래된 경우에만 연어와 송어의 생리적 필요 범위 내에서만 사료를 공급합니다. 유기적 공급원에서 유래된 아스타잔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아스타잔틴이 풍부한 것과 같이 천연 공급원에서 유래된 아스타잔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파피야 로도지마</i>
ex2b	향미료 화합물	밤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농산물 추출물만 사용 (<i>카스타네아 사티비밀</i> .)

▼B

(3) 영양첨가물

(에이) 유사한 효과를 갖는 비타민, 프로비타민 및 화학적으로 잘 정의된 물질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x3a	비타민과 프로비타민	농산물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 농산물에서 유래한 것: — 합성적으로 유래된 비타민, 농산물 유래 비타민과 동일한 것만 단위위동물 및 양식동물에 사용할 수 있음 — 합성적으로 유래된 비타민만 농산물에서 유래된 비타민과 동일한 A, D 및 E는 반추동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은 유기 반추동물이 사료를 통해 필요한 양의 해당 비타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한 후 회원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ID 번호 또는 가능한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3a370	타우린	고양이와 개에게만 해당 가능한 경우 합성원산지가 아님
3a920	무수베타인	유기 생산된 단위 동물 및 어류에 한함; 구 할 수 없는 경우 천연 유래

▼B

(B) 미량 원소의 화합물

ID 번호 또는 가능한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3b101	탄산철(II)(시더라이트)	
3b103	황산철(II) 일수화물	
3b104	황산철(II) 7수화물	
3b107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철(II) 킬레이트	가능한 경우 유기농 대두 생산에서
3b105	푸마르산제일철	규정 (EC) No 767/2009 제3조 제 2항 (o)에 정의된 “특정 영양 목적 용 사료”로서만 사용 가능 규정 (EU) 2020/354 부속서 Part B 표 항목 ‘64’에 따라, 출생 후 철 결핍 보충 목적에 한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포유 자돈(suckling piglets)에만 제한된 기 간 동안 사용 가능
3b110	철덱스트란 10%	특정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로 EU 위원회 규정(EU) 2020/354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 출생 후 철분 부족에 대한 보상 젖먹이 돼지 전용 재배 매체 발효 과정 덱스트란은 비GMO 원산지여야 합 니다. 선택적인 적용에 제한적으로 사용 (필요한 돼지 새끼에게만, 기간 한 정)

▼M3

그만큼

-을 위한

▼B

3b201	요오드화칼륨	
3b202	요오드산칼슘, 무수	
3b203	코팅된 과립형 무수요오드칼슘	
3b301	코발트(II) 아세테이트 4수화물	
3b302	코발트(II) 탄산염	
3b303	코발트(II) 탄산수산화물 (2:3) 일수화물	
3b304	코팅된 과립 코발트(II) 탄산염	
3b305	코발트(II) 황산염 7수화물	
3b402	탄산구리(II) 디하이드록시모노하이드레이트	

▼B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3b404	산화구리(II)	
3b405	황산구리(II) 5수화물	

▼M2

3b407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구리(II) 킬레이트	가능한 경우 유기농 대두 생산에서
-------	------------------------	--------------------

▼B

3b409	디코퍼클로라이드트리하이드록사이드	
3b502	산화망간(II)	
3b503	황산망간, 일수화물	

▼M2

3b505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망간 킬레이트	가능한 경우 유기농 대두 생산에서
-------	--------------------	--------------------

▼B

3b603	산화 아연	
3b604	황산아연 7수화물	
3b605	황산아연 일수화물	
3b609	염화아연수산화물일수화물	

▼M2

3b612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아연 킬레이트	가능한 경우 유기농 대두 생산에서
-------	--------------------	--------------------

▼B

3b701	몰리브덴산나트륨이수화물	
3b801	셀레나이트나트륨	
3b802 3b803	코팅된 과립 셀레나이트나트륨 셀레 나이트나트륨	
3b810	셀렌화 효모, <i>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에</i> CNCM I-3060, 비활성화됨	

▼M2

3b810i	셀렌화 효모 <i>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에</i> CNCM I-3060, 비활성화됨	
--------	---	--

▼B

3b811	셀렌화 효모, <i>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에</i> NCYC R397, 비활성화됨	
3b812	셀렌화 효모, <i>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에</i> CNCM I-3399, 비활성화됨	
3b813	셀렌화 효모, <i>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에</i> NCYC R646, 비활성화됨	
3b817	셀렌화 효모, <i>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에</i> NCYC R645 비활성화됨	

▼B

(기음)아미노산, 그 염 및 유사체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3c3.5.1 그리고 3c352	L-히스티딘 일수화물 모노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발효를 통해 생산된 것은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2부 3.1.3.3항에 나열된 사료원이 어류의 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의 히스티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연어류 사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축공학 첨가제

ID 번호 또는 기능적인 그룹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4a, 4b, 4c 그리고 4d	효소와 미생물	
4d7과 4d8	염화암모늄	고양이 전용

▼M1

▼M3

(5) 가공보조제

규정 (EC) No 1831/2003 제2조 제2항 (h)에서 정의된 가공 보조제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규정된 구체적 조건 및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명칭	구체적 조건 및 제한사항
에탄올	단백질 사료(protein meals) 생산을 위한 추출 용매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계적 추출 방식의 단백질 사료가 충분한 양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가능한 경우 발효를 통해 얻은 것만 사용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
파파인	규정 (EU) No 142/2011 부속서 I 제18호에서 정의된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향미 내장(flavouring innards) 생산에만 사용 가능 효소는 공정 중 비활성화되어야 하며, 최종 향미 내장에는 해당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제품에 기술적 효과를 미치지 않아야 함 2027년 1월 1일부터는 유기 원료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 가능



부록 IV

(e)항에 언급된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승인된 제품 규정 (EU) 2018/848 제24조(1)항 (f) 및 (g)

파트 A

연못, 케이지, 탱크, 경주로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제품 동물 생산에 사용되는 건물 또는 시설

파트 B

건물 및 설비의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되는 제품 식물 생산을 위해, 농업용 지주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파트 C

가공 및 보관 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제품

파트 D

본 규정 제12조(1)항에 언급된 제품

다음 제품 또는 규정 (EC) 889/2008의 부록 VII에 나열된 다음 활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살생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성소다;
- 가성칼륨;
- 옥살산;
- 아마씨 오일,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을 제외한 천연 식물 에센스
- 질산;
- 인산;
- 탄산나트륨;
- 황산구리;
- 과망간산칼륨;
- 천연 카멜리아 씨앗으로 만든 차 씨앗 케이크
- 부식산;
- 과산화아세트산(과산아세트산 제외)

▼B

부록 V

가공식품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제품 및 물질 유기농 식품 및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

▼M3

A부

(a) 항목에 언급된 승인된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규정(EU) 2018/848의 제24조(2)항

섹션 A1 – 운반체를 포함한 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을 첨가할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은 (EC) 규정 1333/2008에 따라 부여된 허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건 및 제한 사항은 (EC) 제1333/2008호 규정에 따른 허가 조건 외에도 적용됩니다.

(EU) 2018/848 규정 제30조(5)항에 언급된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해 코드 번호 옆에 별표가 표시된 식품 첨가물은 농업 유래 성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암호	이름	첨가 가능 유기식품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 153	식물성 탄소	먹을 수 있는 치즈 잿빛 염소 치즈 껍질 모르비에 치즈	
E 160b(i)*	아나토빅신	레드 레스터 치즈 더블 글로스터 치즈 체다치즈 미물렛 치즈	
E 160b(ii)*	아나토 노르빅신	레드 레스터 치즈 더블 글로스터 치즈 체다치즈 미물렛 치즈	
E 170/207-439-9 and 215-279-6	탄산칼슘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E 220	이산화황	과일 와인(포도 외의 과일로 만든 와인, 사이다, 페리 포함) 및 설탕을 첨가한 밀주와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밀주	
E 223	메타비술산나트륨 파이트	갑각류	
E 224	칼륨 메타비 이황산염	과일 와인(포도 외의 과일로 만든 와인, 사이다, 페리 포함) 및 설탕을 첨가한 밀주와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밀주 100 mg/l(모든 소스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수준, SO로 표시) ₂ (mg/l)	

▼M3

암호	이름	첨가 가능 유기식품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250	아질산나트륨	육류 제품 제품의 특정 기능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유능한 당국에 만족스럽게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252 최대 유입 금액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NaNO로 표현됨²: 80 mg/ kg, 최대 잔류량 NaNO로 표현된 양²: 50mg/kg	
▼M3 E252	질산칼륨	육류 제품 제품의 특정 기능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유능한 당국에 만족스럽게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250 최대 유입 금액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NaNO 로 표현됨³: 80 mg/ kg, 최대 잔류량NaNO로 표현된 양³: 50mg/kg	
E 267*	완충 식초	식물 및 동물 유래 제품 유기 생산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 가능	
E 270/200-018-0	젖산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치즈 생산 시 염수(brine bath)의 pH 조절을 위한 용도로 사용
E 290/204-696-9	이산화탄소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296	능금산	식물성 제품	
E 300	아스코르브산	식물성 제품, 기타 첨가물 또는 소금 외의 성분이 추가된 육류 제품(카테고리 08.3(2)) 및 육류 가공품(카테고리 08.2(2))	
E 301	아스코르브산나트륨	육류 제품 5월 오직 BE 사용된 ~에 질산염과 아질산염과의 연결	
▼M3 E 306*	토코페롤이 풍부한 발체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항산화제
E 322*	레시틴	식물성 제품 동물성 제품	오직 유기농 생산으로만

▼M3

암호	이름	첨가 가능 유기식품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325	젖산나트륨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 우유 기반 및 육류 제품	
E 330/201-069-1	구연산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331	구연산나트륨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333	칼슘 시트르산	식물성 제품	
E 334	타르타르산 (엘(+)-)	식물성 원료로 만든 밀주 제품	
E 335	타르트레이트나트륨	식물성 제품	
E 336	타르트르산칼륨	식물성 제품	
E 337	칼륨 나트륨 타르트레이트	식물성 제품	
E 341(i)	모노칼슘포스페이트	셀프레이징 밀가루	
E392*	추출물 로즈마리	~의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400	알긴산	식물성 제품 우유 제품	
E 401	알긴산나트륨	식물성 제품 우유 제품 고기를 기반으로 한 소시지	
E 402	알긴산칼륨	식물성 원료의 제품 우유 기반 제품	
E406	아가르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 우유 기반 제품 및 육류 제품	
E 407	카라기난	식물성 원료의 제품 우유 기반 제품	
E 410*	로커스트콩검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412*	구아검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414*	아랍검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415	잔탄검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417	타라검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M3

▼M3

암호	이름	첨가 가능 유기식품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 418	젤란검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 고아실형(high-acyl form)만 사용 가능	
E 422	글리세린	식물 추출물 향료 식물 유래 제품만 사용 가능 유기 생산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 가능 용매 및 담체로 사용 가능 젤 캡슐에서 보습제로 사용 가능 정제(tablets)의 표면 코팅 용으로 사용 가능	
E 440(i)*	펙틴	식물성 원료의 제품 우유 기반 제품	
E 460/232-674-9	셀룰로오스	젤라틴	젤라틴 식물성 제품
E 464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캡슐용 캡슐화 소재	
E 500/207-838-8, 205-633-8, 208-580-9	탄산나트륨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501/209-529-3, 206-059-0	칼륨 탄산염	식물성 제품	건포도 생산을 위한 건조 보조제로만 사용 가능
E 503	암모늄 탄산염	식물성 제품	
E 504	마그네슘 탄산염	식물성 제품	
E 509/233-140-8	염화칼슘	우유 기반 제품	응고제
E 511/232-094-6	염화마그네슘	식물 유래 제품 응고(coagulation)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식물 유래 제품 정화/응집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E 516/231-900-3	황산칼슘	식물 유래 제품 담체(carrier)로 사용하거나 응고(coagulation)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식물 유래 제품 정화/응집제(clarifying/flocculating agent)로만 사용 가능

▼M3

암호	이름	첨가 가능 유기식품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524/215-185-5	수산화나트륨	'라우겐게베크' 향료	표면처리 산도 조절제
E 551/231-545-4	이산화규소	코코아 허브 및 향신료 건조 분말 형태 향료 봉랍	코코아의 경우 자동 분배기에서만 사용 가능
E 553b	활석	육류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 소시지 제품	육류를 원료로 한 소시지의 경우 표면처리만
E 901*/232-383-7	밀랍	과자	유약제 오직 유기농 생산으로만

▼M3

암호	이름	첨가 가능 유기식품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E 903*/ 232-399- 4	카르나바 왁스	과자 감귤류 유해 생물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 조치로서, (EU) 2017/1279 호 시 행위원회 지침에 따라 과일에 대한 의무적인 극저온 처리에 대한 글레이징 제제 완화 방법(1)으로, 오직 유기농 생산에서만 사용 가능	식물 유래 제품 이형제로서 유기 생산에서만 유래된 것만 사용 가능
E 938	아르곤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939	헬륨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941/231- 783-9	질소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948	산소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E 968	에리스리톨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이온교환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생산만으로 생산
-/200-578- 6	에탄올		식물 및 동물 유래 제품 설탕 생산 시 결정화 종자(crystallization primers) 에 사용하는 용매 및/또는 추 출용 용매로서만 사용 가능
-/200- 580-7	아세트산		식물 유래 제품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 사용 어류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 사용
/215-108- 5	벤토나이트		식물 유래 제품 미드(mead) 접착제로서만 사용 가능
/215-137 -3	수산화칼슘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231- 595-7	염산		젤라틴 고다, 에담, 마스담 치즈, 보렌카 스, 프리세 및 레이드세 나겔카스 치즈 가공 시 염수(brine bath) 의 pH 조절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M3

암호	이름	첨가 가능 유기식품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231-639-5	황산		젤라틴 설탕(류)
/231-765-0	과산화수소		젤라틴
/232-554-6	젤라틴		식물 유래 제품
/232-555-1	카제인		식물 유래 제품
/293-292-6	이징글라스		식물 유래 제품
/931-328-0	활성탄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
	암모늄 수산화물		젤라틴
	인산아암모늄		과일 와인, 사이다(cider), 페리(perry), 미드(mead)
	L(+) 젖산 (발효 유래)		식물 단백질 추출물
	티아민 염산염		과일 와인, 사이다, 페리, 미드
	규조토		식물 유래 제품 젤라틴
	홉 추출		식물 유래 제품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 항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
	헤이즐넛 껍질		식물 유래 제품
	펠라이트		식물 유래 제품 젤라틴
	소나무 수지 추출물		식물 유래 제품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 항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
	쌀 분말		식물 유래 제품

▼M3

이름	처리에 대해서만 승인된 유기농 식품을 따른다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탄닌산		식물 유래 제품 여과 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
식물성 오일		식물 및 동물 유래 제품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 가능 윤향, 이형 또는 소포(거품 방지) 용도로 만 사용 가능
식초		식물 유래 제품 유기 생산에서만 유래된 것 사용 어류 유기 생산에서만 유래된 것 사용
물		식물 및 동물 유래 제품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0/2184의 의미 내에서 인 간 소비용으로 적합한 물
목재섬유		식물 및 동물 유래 제품 목재의 출처는 인증된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벌채된 목재로 제한되어야 함 사용되는 목재는 독성 성분(수확 후 처리 물질, 자연 발생 독소 또는 미생물 유래 독소)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완두 단백질		과일 주스 및 과일 와인(포도를 제외한 과 일로 만든 와인, 사이다 및 페리 포함)과 미 드(mead)의 정제(clarification)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 사용
감자 단백질		과일 주스 및 과일 와인(포도를 제외한 과일 로 만든 와인, 사이다 및 페리 포함)과 미드(mead)의 정제(clarification)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 사용

▼M3

- (1) 기존 상업용 화학물질 유럽 목록 (OJ C 146, 1990.6.15, p. 4)
- (2)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333/2008 (2008년 12월 16일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II (OJ L 354, 2008.12.31, p. 16, ELI: <http://data.europa.eu/eli/reg/2008/1333/oj>)
- (3)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19/2072 (2019년 11월 28일)
식물 병해충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규정 (EU) 2016/2031의 시행을 위한 통일 조건을 설정하고,
위원회 규정 (EC) No 690/2008을 폐지하며,
위원회 이행규정 (EU) 2018/2019를 개정하는 규정
(OJ L 319, 2019.12.10, p. 1, ELI: http://data.europa.eu/eli/reg_impl/2019/2072/oj)
- (4)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0/2184 (2020년 12월 16일)
인간 소비용 물의 품질에 관한 지침
(OJ L 435, 2020.12.23, p. 1, ELI: <http://data.europa.eu/eli/dir/2020/2184/oj>)

파트 B

(b) 항목에 언급된 가공 유기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승인된 비유기 농업 성분

규정(EU) 2018/848의 제24조(2)항

이름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알가 아라메(<i>아이세니아 바이시클리스</i> (<i>Eisenia bikelis</i>))가 가공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조류와 직접 관련된 1단계 가 공 제품도 포함됩니다.	
알가 히지키(<i>히지키아 푸시포르메</i> (<i>Hizikia fusiforme</i>)) 가공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조류와 직접 관련된 1 단계 가공 제품도 포함됩니다.	
파우다르코 나무껍질 <i>핸드로안투스 임페</i> (<i>Kombucha</i>) 및 차 혼합물에만 사용 가능 <i>티기</i> 노수스('라파초')	
케이싱	동물성 또는 식물성 천연원료로 만든 재료
젤라틴	돼지 이외의 다른 출처에서
밀크미네랄파우더/액체	감각기능에 사용될 때만 염화나트륨을 전부 또는 일 부 대체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야생어류 및 야생수생동물과 그로부 터 가공을 통해 얻은 제품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3.1.3.1(c) 항 목에 따라 규정(EU) 1380/2013에 명시된 원칙에 따 라 유능 당국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것으 로 인증된 어장에서만 사용 가능(유기 양식업에서 사 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B

파트 C

규정 제24조(2)항(c)에 언급된 효모 및 효모 제품 생산을 위한 승인된 가공 보조제 및 기타 제품
(EU) 2018/848

이름	1차 효모	효모 생산/제과/제형 레이션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칼슘 염화물	X		
탄소 이산화물	X	X	
구연산	X		효모 생산의 pH 조절을 위해
유산	X		효모 생산의 pH 조절을 위해
질소	X	X	
산소	X	X	
감자 녹말	X	X	필터링을 위해 오직 ~에서 본질적인 생산
나트륨 탄산염	X	X	pH 조절을 위해
채소 유화	X	X	유효제, 이형제 또는 소포제(거품 방지제) 유기 생산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 가능
발효 활성제	X		효모 추출물 또는 자가분해물(autolysate)에서 유래한 영양소건조물 기준(substrate의 건물 중량 기준) 최대 5%까지 사용 가능

▼M3

▼B

파트 D

제2.2항에 언급된 와인 부문의 유기 포도 제품의 생산 및 보존을 위한 승인된 제품 및 물질
규정(EU) 2018/848 부록 II의 VI

이름	ID 번호	위임된 부록 I의 참조 규정 (EU) 2019/934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공기		A부, 표 1, 1항 및 8항	
텅빈 산소	E 948 CAS 17778-80-2 (주)에스에이	A부, 표 1, 1항 A부, 표 2, 8.4항	
아르곤	E 938 CAS 번호 7440-37-1	A부, 표 1, 4항 A부, 표 2, 8.1항	버블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소	E941 CAS 번호 7727-37-9	A부, 표 1, 4, 7 및 8항 A 부분, 표 2, 8.2항	
탄소 이산화물	E290 CAS 번호 124-38-9	A부, 표 1, 4항 및 8항 A 부분, 표 2, 8.3항	
조각의 참나무		A부, 표 1, 11항	

▼B

이름	ID 번호	위임된 부록 I의 참조 규정 (EU) 2019/934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타르타르산 산(L(+)-)	E334 CAS 번호 87-69-4	A 부분, 표 2, 1.1항	
유산	E 270	A 부분, 표 2, 1.3항	
칼륨 엘(+)- 타르트레이트	E 336(ii) CAS 번호 921-53-9	A 부분, 표 2, 1.4항	
칼륨 중탄산염	E 501(ii) CAS 298-14-6 (식품첨가물 298-14-6)	A 부분, 표 2, 1.5항	
칼슘 탄산염	E170 CAS 번호 471-34-1	A 부분, 표 2, 1.6항	
칼슘 황산염	E 516	A 부분, 표 2, 1.8항	
황 이산화물	E 220 CAS 번호 7446-09-5	A 부분, 표 2, 2.1항	레드 와인의 경우, 최대 이산화황 함량은 위임 규정 (EU) 2019/934의 부속서 I, 파트 B의 A.1.(a) 항목에 명시된 대로 리터당 100밀리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잔여 당도가 리터당 2그램 미만인 화이트 와인 및 로제 와인의 경우, 위임 규정 (EU) 2019/934의 부속서 I, 파트 B의 A.1.(b) 항목에 명시된 대로 리터당 최대 이산화황 함량은 150밀리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다른 와인의 경우, 부속서 I, 파트 B에 따라 적용되는 최대 이산화황 함량은 리터당 30밀리그램이 감소해야 합니다.
칼륨 중아황산염	E 228 CAS 번호 7773-03-7	A 부분, 표 2, 2.2항	
칼륨 메타비소 파이트	E224 CAS 번호 16731-55-8	A 부분, 표 2, 2.3항	
L 아스코르브산 산	E300	A 부분, 표 2, 2.6항	
숯 오예노를 위해 논리적 사용		A부, 표 2, 3.1항	
디아 모늄 수소 인산염	E 342/CAS 7783-28-0	A 부분, 표 2, 4.2항	

▼B

이름	ID 번호	위임된 부록 I의 참조 규정 (EU) 2019/934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티아민 수력 염화물	CAS 번호 67-03-8	A 부분, 표 2, 4.5항	
누룩 자기분해물		A 부분, 표 2, 4.6항	
효모세포 벽		A 부분, 표 2, 4.7항	
비활성화된 효모		A부, 표 2, 4.8항 A부, 표 2, 10.5항 A부, 표 2, 11.5항	
먹을 수 있는 젤라틴	CAS 번호 9000-70-8	A 부분, 표 2, 5.1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밀 단백질		A 부분, 표 2, 5.2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완두콩 단백질		A 부분, 표 2, 5.3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감자 단백질		A 부분, 표 2, 5.4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부레풀		A 부분, 표 2, 5.5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카세인	CAS 번호 9005-43-0	A 부분, 표 2, 5.6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칼륨 카제인산염	CAS 번호 68131-54-4	A 부분, 표 2, 5.7항	
계란 알부민	CAS 번호 9006-59-1	A 부분, 표 2, 5.8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벤토나이트	E558	A 부분, 표 2, 5.9항	
이산화규소 (젤 또는 콜 로이드 용 액)	E551	A 부분, 표 2, 5.10항	
타닌		A부, 표 2, 5.12항 A부, 표 2, 6.4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Aspergill us niger 에서 유 래한 키 토산	CAS 번호 9012-76-4	A부, 표 2, 5.13항 A부, 표 2, 10.3항	



이름	ID 번호	위임된 부록 I의 참조 규정 (EU) 2019/934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
누룩 단백질 추출물		A부, 표 2, 5.15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칼륨 알긴산염	E 402/CAS 9005-36-1	A부, 표 2, 5.18항	
칼륨 수소 타르테레이트	E336(i)/CAS 868-14-4	A 부분, 표 2, 6.1항	
구연산	E330	A 부분, 표 2, 6.3항	
메타 타르타르산	E353	A 부분, 표 2, 6.7항	
아라비아 고무	E 414/CAS 9000-01-5	A 부분, 표 2, 6.8항	가능하다면 유기 원료에서 파생 됨
누룩 마노프로 테인스		A 부분, 표 2, 6.10항	
펙틴 리아제	유럽연합 4.2.2.10	A 부분, 표 2, 7.2항	정화 목적의 와인학적 용도로만 사용
펙틴 메틸레스 테라제	유럽연합 3.1.1.11	A 부분, 표 2, 7.3항	정화 목적의 와인학적 용도로만 사용
폴리갈락 투로나제	유럽연합 3.2.1.15	A 부분, 표 2, 7.4항	정화 목적의 와인학적 용도로만 사용
헤미셀 룰라제	유럽연합 3.2.1.78	A 부분, 표 2, 7.5항	정화 목적의 와인학적 용도로만 사용
셀룰라아제	유럽연합 3.2.1.4	A 부분, 표 2, 7.6항	정화 목적의 와인학적 용도로만 사용
효모를 위한 와인 생산		A 부분, 표 2, 9.1항	
유산 박테리아		A 부분, 표 2, 9.2항	
구리 구연산염	CAS 번호 866-82-0	A 부분, 표 2, 10.2항	
알레포 소나무 수지		A부, 표 2, 11.1항	
신선한 찌꺼기		A부, 표 2, 11.2항	오직 본질적인 생산

▼M3

부록 VI

제3국 및 EU 최외곽 지역에서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제품 및 물질
(규정 (EU) 2018/848 제45조 제2항에 따른)

PART A

제3국에서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제품 및 물질

식물보호제품에 사용되는 활성 물질

아래 표에 나열된 활성 물질은 관련 제3국 법규를 준수하고, Codex Alimentarius 지침 CXG 97-2022(1)에 따라 최대 잔류 한도에서 면제되거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396/2005(2)에 포함되었거나, 해당 규정에서 특정 최대 잔류 한도가 설정된 경우, 제3국 유기농 생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해당 표에 명시된 특정 조건 및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CAS number	활성 물질명	특정 조건 및 한도
	바이러스 포함 미생물(생물학적 방제제로 사용 시)	GMO 기원 아님 GMO 기원의 배양 매체 사용하여 생산되지 않음
74-85-1	에틸렌	파인애플 개화 유도용

파트 B

EU 최외곽 지역에서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제품 및 물질

식물보호제품에 사용되는 활성 물질

아래 표에 나열된 활성 물질은 EU 최외곽 지역에서 유기농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EU 법규를 준수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EU 법규에 근거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https://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codex-texts/guidelines/en>.

² 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 (EC) No 396/2005(2005년 2월 23일자): 식물 및 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의 최대 잔류 허용기준(MRLs)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이사회 지침 91/414/EEC를 개정하는 규정입니다